

② 감면진료 대상자 (본인부담 진료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받는 환자)

구 分	적용대상자	관련법률	의료지원 범위	
			보훈병원 (약제비 감면 O)	위탁병원 (약제비 지원 ³⁾ 참조)
국가유공자법 42조 1항 의료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유공자	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	일본에 거주하던 자 중 6.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	국가유공자법	면제
	무공수훈자	무공훈장을 받은 자		진료비 60%
	보국수훈자	보국훈장을 받은 자		진료비 60%
	4.19 혁명 공로자	4.19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		진료비 60%
	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	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		진료비 60%
6.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	6.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	진료비 60%	해당없음
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	국가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		진료비 60%	(75세이상자) 60%
독립유공자의 유가족	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, 자녀, 손자녀		(12년 7월 이후 등록자는 선순위유족 1인)	(12년 7월 이후 등록자는 선 순위유족 1인 또는 625 전몰 가족수당 수령자)
참전유공자	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	참전유공자법	진료비 90%	진료비 90%
5.18 민주화 운동사망자·행방불명자· 부상자의 유가족	5.18 민주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	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	진료비 60%	해당없음 ('16.6.23 이후 신청한 5.18 민 주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 의 유가족 범위는 가족 중 배 우자 또는 선 순위 유족 1명 으로 변경)
그 밖에 5.18 희생자	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받는 자		진료비 50%	
그 밖에 5.18 유가족	5.18 민주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		진료비 30%	
특수임무공로자	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 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	특수임무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	진료비 60%	
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	특수 임무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		진료비 60%	
장기복무제대군인	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		진료비 50%	
창군자	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	제대군인 지원에 관 한 법률	진료비 50%	('16.6.23 이후 신청한 5.18 민 주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 의 유가족 범위는 가족 중 배 우자 또는 선 순위 유족 1명 으로 변경)
군 복무 중 발병자	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전역한 자		진료비 50%	
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	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,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	보훈보상자법	진료비 60%	
국가사회기여자	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, 해양경찰, 소방, 교정공무원	MOU	진료비 30%	-

1) 감면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비율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와 약제비를 감면(보훈유형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여부 상이)

2) (위탁병원 진료) 건강보험 가입한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(75세 이상) 폐지(2023.10.1.), 비급여 항목 미지원

3) (위탁병원 약제비 지원)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1인당 연간 252,000원, 무공수훈자 160,000원 지원(위탁병원 원외 처방받아 구매한 약제비용을 지역 보훈지청 신청, 연간 지원금 내 환급)